



# 油價하락과

## 세계경제전망

### 油價하락과 경제성장

세계경제 전망은 日本 東京에서 열렸던 선진국 정상회담 후에도 별로 수정할 필요가 없는 것 같다. 東京에서 합의된 정책변경의 어느것을 택해도 그 구체적인 효과면에서는 최근 수개월간 경험한 석유가격의 하락과 급격한 円貨강세라는 2 대쇼크에 비하면 그다지 큰것은 아니다. 예상밖의 변수도 감안해야 하지만, 현재의 세계경제 전망은 단기적으로나 장기적으로 행복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낮은 인플레이션의 지속적인 경제회복은 확실하다.

세계경제의 성장은 85년 중반부터 매우 완만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84년 중반에 美國의 급성장이 중단되었을 때, 그밖의 주요 선진국경제가 美國대신에 세계경제를 이끌어가려는 움직임이 없었다. 그후, 세계경제 성장은 둔화되었으며, 그 이유중의 하나로 물가하락의 예상내지는 실제 물가하락을 들 수 있다. 상품가격은 84년 중반 이후 꾸준히 하락하였으며, 석유제품가격도 조금밖에 상승하지 않았던가 아니면 실질적인 하락을 보이고 있다. 구매자는 매입을 연기하고, 재고를 줄이고 있다. 동시에 실질적인 고금리가 지속되었기 때문에 투자의욕이 상실되었다.

이런 상황하에서 세계경제는 석유 가격의 대폭하락이라는 대쇼크를 경험했다. 당면한 경제성장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것은 확실히 이 쇼크이었다. 과거 세번의 경기침체중 두가지가 석유가격의 상승에 의해 일어났다. 석유가격의 상승이 경기를 후퇴시킨다면 논리적으로는 석유가격 하락은 호황을 가져온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많은 경제전문가는 세계경제의 회복력과 지속기간

原油가격의 하락, 金利 및 인플레율의 저하는  
모두 지속적인 경제회복의 호재가 될 것이다 …  
몇가지 위험요소는 있지만 적어도 향후 2년동안은  
인플레 없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절호의 시기이다.

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석유가격의 상승이 경기후퇴를 가져오는 이유는 몇가지 있다. 첫째, 석유가격의 상승에 따라 일반적인 가격 수준이 상승했을 때, 정부가 이에 대응하여 신속히 금융 완화 정책을 펴지 않는 한, 통화의 실질가치는 떨어진다. 둘째, 석유 소비국에서 산유국으로 소득과 富가 이동하게 된다. 셋째, 임금수준이 석유가격의 상승에 맞추어 원만히 조정되지 않았을 경우, 임금이 감소될 염려가 있으며, 매출액과 투자에 영향을 끼친다.

한편, 석유가격이 하락하면 이들 제관계는 역전될 것이다. 우선 실질적인 通貨 공급량의 수준에 바람직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은 확실하다(석유가격의 하락에 대응하여 통화당국이 금융정책을 진축시키는 일은 없다). 그러나, 산유국에서 석유소비국으로 부가 이동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 일부 산유국은 경제체질에 있어서 소비성이 높으며 수입이 감소하면 서둘러 지출을 삭감해야만 되는 국가도 나올 것이다. 한편, 선진국들은 석유가격이 하락한 결과, 소득이 증가하면 이에 따라 지출도 증가할 것이다.

임금수준에 관련한 효과는 이들 중에서 가장 크다. 인플레율의 저하는 임금상승률을 낮춘다. 그 결과, 제조업의 이익률은 회복되고, 유럽 특히 영국에서와 같이 극단적으로 높은 실업률을 낮추는데 일조를 할 것이다. 석유 가격의 하락에 따른 유리한 효과는 세계경제가 호전되기 위한 큰 뒷받침이 될 것이다.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보면 이들 효과는 즉시 나타나지 않으나, 적어도 금년 중반부터 경제성장 속도는 높아질 것이다. OECD 회원국 전체의 공업생산은 87년 7%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아도 될 것이다.

## 金利하락과 세계경제

83, 84년 美國의 경기확대는 일면에서 세계경제에 큰 이

익을 가져다 주었으나, 동시에 큰 문제도 야기시켰다. 美國의 경제정책은 대내균형을 잊고 있었으며, 대규모 공공 지출 확대정책과 진축적인 금융정책을 병용하였다. 이것은 필연적으로 고금리를 초래했으며, 국제적으로도 균형을 잃게 되었다. 그밖의 국가가 재정적자의 삭감에 노력하고 있을 때에 美國의 재정적자는 불어나기만 하였으며, 이와같은 불균형의 결과 고금리가 정착했을 뿐만 아니라, 달러가치의 상승을 가져왔다.

美國에 재화를 공급하는 업자는 이러한 변화 때문에 이중으로 이익을 보았다. 美國시장이 급격히 확대된데다, 외국의 공급자는 달러강세에 의해 경쟁상, 美國의 제조업자에 대해 우위에 섰다. 당연히 美國내에서 보호조치를 요구하는 소리가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졌다. 85년 9월 G 5(선진 5개국 재상회의)에서 달러시세, 특히 円貨에 대한 환율인하를 요구하게 되었다. 무역전쟁의 위험을 무릅쓰기보다는 이런방법이 득책이라는 합의가 이루어졌던 것이다.

이후, 달러貨는 円貨에 대해 30%나 떨어졌다. 그러나, 東京 선진국 정상회담에서 美國측이 이에 만족하지 않고, 그밖의 선진국이 일종 내수확대책을 취하던가, 그렇지 않으면 달러 약세를 더 진전시키려한다는 것은 명확하다. 그러나, 문제의 복잡성은 美國의 자세에 원인이 있는 문제에 대해 그밖의 나라, 특히 日本에 그 책임이 있다고 美國측이 확신한 점에 있다. 세계경제의 기본적인 불균형은 자국의 자원을 갖고 공급할 수 있는 것 보다도 훨씬 많은 것을 지출하려는 美國과, 자국의 자원이 하로지출을 억제하려는 길을 택하고 있는 그밖의 나라들과의 사이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기본적인 불균형은 美國이 지출을 줄이고, 그밖의 나라가 지출을 늘리려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한 개선되지 않을 것이다. 美國이 西獨, 日本에 정책변경을 설득시켜도 양국이 무조건 이에 응할 것이라고는 생각하기

어렵다. 문제는 달러시세의 하락만으로 앞으로 문제가 해결될 것인가 하는 것이다.

달러 약세와 円, 마르크 貨의 강세는 어느정도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달러 약세에 의해 美國의 실질소득은 낮아지고, 日本, 西独의 실질소득은 높아진다. 이러한 변화가 쌍방의 지출 패턴을 자동적으로 변화시킬지도 모른다. 美國人은 수입품 수요를 줄이고 日本人과 西独人은 수입품을 값싸게 느낄 것이다. 또한, 日本과 西独은 美國으로의 수출이 어려워질 것이다. 그러나 환율의 변화는 지출 패턴이 근본적으로 변화하지 않는 한, 오랫동안 계속될 수 없다. 예를들면, 円貨강세에 대응하기 위해 日本의 수출업자는 우선 수출가격을 인하하고, 이어서 노동자의 임금을 인하할지도 모른다. 동시에 美國이 환율하락에 맞추어 가격과 임금을 인상하면 아무런 효과도 거두지 못할 것이다. 日本에서 물가가 하락하고, 美國에서 물가가 상승하는 실태가 남을 뿐이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진정 필요한 것은 美國 재정적자의 삽감이다. 이러한 방향으로의 현저한 진전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진전이 없는 한, 오늘의 정치적 경제적인 난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찾아내기 힘들 것이다. 하나의 가능성으로서는 美國이 일층 달러약세를 추진하고, 이를 위해 다시 금리를 인하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선진공업국이 자국통화의 상승을 이 이상 바라지 않는 경우 이번에는 이를 나라가 金利를 낮추려 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금리인하 경쟁이 일어날 것이다. 이것이 현실로 나타나면 연말까지 세계적인 대폭금리 인하라는 사태가 일어나서 세계경제의 회복을 촉진시킬 것이지만, 그 반면에 통화공급량의 과도한 증가라는 위기적인 상황을 낳게 될 것이다. 이러한 위험을 인식하고 있다면—특히 FRB가 인수하고 있다면—사전에 어떠한 수단을 강구할 것이다. 그러나, 금리인하 정책이 없다고 해도 연내에 금리수준이 더한층 낮아질 공산이 크다.

西獨과 日本에서는 하락하고 있다. 제품가격은 내년에 약 2%, 소비자 물가는 3%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다.

OECD전체의 공업생산은 금년에 3.5%증가할 것이며, 내년에는 7%증가할 것이다. 내년의 GDP(국민총생산)는 4%신장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성장률은 주요 선진국들이 서로 비슷할 것이며, 회복 초기단계에서는 역시 소비확대에 의해 성장하게 될 것이다. 일단 소비지출이 충분한 수준에 도달한다면 이번에는 그에 따라 자본지출이 회복될 것이다.

물론 위협이 없는 것은 아니다. 예를들면, 개발도상국중 어느나라가 채무지불을 거부하는 사태가 발생하면 세계적으로 금융공황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또한 경기회복이 늦어지면 무역전쟁의 위험성이 높아질 것이다. 그리고, 확대정책에 의한 경기회복이 지나치게 진행되면 인플레가 재연되고 88년에는 성장이 급정지될 우려도 있다. 그러나 이들 위협이 도사리고 있다고 해도 적어도 향후 2년동안은 인플레없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절호의 시기이다. 그리고 수년에 걸쳐서 낮은 인플레와 안정성장이 지속될 것도 충분히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

〈일본 경제신문 6 / 2〉

### 국제金利 전망(유로金利)

(단위: 年利, %)

	1986			1987
	5월	7월	10월	4월
美 國	6.94	6.93	7.13	8.55
日 本	5.42	4.66	4.76	4.83
西 獨	4.15	3.48	3.32	3.43
英 國	9.96	8.77	7.82	7.95
프 랑 스	7.29	9.41	10.67	11.54

註:月末基準

〈資料〉 WEFA, Wharton Foreign Exchange Rate Outlook, 1985. 4.

### 세계 經濟成長 전망

(단위: %)

	1976-79	1980-82	1983	1984	1985	1986
世 界	4.1	1.3	2.4	4.1	2.9	3.0
先進國	4.0	1.0	2.4	4.5	2.8	3.0
開途國	5.2	1.5	0.5	2.4	2.1	1.7
共產圈	3.6	2.0	3.7	4.0	3.9	3.8

〈資料〉 WEFA, World Economic Outlook, 1986. 5.

## ◎ 대통령령 제 11, 939호

관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마그네슘과 등의 관세율 변경에 관한 규정

제 1 조(적용물품등) 관세법 제16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율을 인하하는 물품과 그 세율 및 한계수량을 다음 표와 같이 정한다.

관세율표번호	품명	규격	세율	한계수량
0301	냉동어류	피레트를 제외 한다. 제	10%	10천 메트릭톤
0303	냉동오징어		10%	3.1천 메트릭톤
0706	타피오카펠리트		7%	150천 메트릭톤
1007	루핀시드		7%	75천 메트릭톤
1201	채종과 콜자		10%	12천 메트릭톤
2523	알루미나시멘트		15%	3.5천 메트릭톤
2709	석유 및 역청유	나프타의 제조에 소요 되는 원유에 한한다.	1%	14,700천배럴
2710	나프타		1%	6,000천배럴
2710	천연가스액상 (N G L)		1%	1,000천배럴
2710	노말파라핀		5%	7,800메트릭톤
2903	디니트로톨루엔		15%	5,200메트릭톤
4801	여과지	1제곱미터의 중량이 16.2 그램 이하의 것에 한한다.	20%	170메트릭톤
7107	금괴		0%	3메트릭톤
7701	마그네슘괴	합금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10%	100메트릭톤
7801	미정제의연괴	연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95를 초과하고 100분의 99.8이하의 것에 한한다. (이하생략)	15%	16천메트릭톤

제 2 조(용도의 제한) 이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물품은 내수용의 것에 한한다. 다만, 금괴 및 미정제의 연

괴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부 칙

① (시행일) 이 영은 198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1986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② (법령의 폐지) 대통령령 제11820호 관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마그네슘과 등의 관세율변경에 관한 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 關稅法 제 16조의 규정에 의한 마그네슘과 등의

관세율변경에 관한 규정 제정이유  
물자수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1986년 하반기중에  
할당관세를 적용할 물품과 그 적용세율 및 한계수량을 정  
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물자수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관세율인하가 필요  
한 알루미나시멘트등 1986년 상반기에 할당관세의 적용  
을 받았던 23개 품목중 쟁연 및 금속의 2개물품을 그 적  
용대상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물품을 계속하여 종전의 관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며, 채종과 콜자에 대하여는 카나다  
와의 통상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그 관세율을 현행 40  
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인하하여 적용함(령 제 1조)

〈법제처 제공〉

## ◎ 동력자원부고시(제 86-28호)

石油事業基金을 조성하기 위한 수입금의 징수 및 석유  
사업기금에 의한 손실보전에 관한 고시중 개정 石油事業  
法시행령 제13조, 제14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석  
유사업 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수입금의 징수 및 石油事  
業基金에 의한 손실보전에 관한 개정고시(동력 자원부고  
시 제84-9호)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한다.

1986년 7월 4일

동력자원부장관

제 1 항(石油事業基金을 조성하기 위한 収入金의 징수금  
액) 중 “가” 및 “나”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법 제17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수입업자 또  
는 석유제작업자가 석유사업기금에 납부할 금액은 수  
입석유 1배럴당 美합중국 통화 11,29 달러에 통관일  
이내의 납부일의 환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나. 다만, 프로판 및 부탄수입시에 석유사업기금에 납  
부할 금액은 수입프로판 혹은 수입부탄 1메트릭  
톤당 美합중국통화 150달러에 통관일 이내의 납부일의  
환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